

##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munity Counter-terrorism

정 우 일\*\*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지역사회 대테러활동 방안 |
| II. 이론적 배경 | IV. 결론             |

#### 〈요 약〉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주제어** : 지역사회, 대테러활동, 지역사회 정보 모형, 소속감 모형, 사회적 통합 모형

\* 이 논문은 2009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경찰학 박사

## I. 서 론

지금까지 테러리즘은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9월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 소속 원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레반 등 국제테러단체의 연계세력들이 국내에 잠입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알 카에다 등 국제 테러단체들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테러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최응렬, 2008).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과 2005년 7월 7일과 21일 영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테러사건 등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단 영국과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에도 테러리즘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사건 이후 2001년 10월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테러용의자 색출을 위해서라면 정부 당국은 상당한 증거 없이 테러범죄 혐의만으로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각종 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물건이나 가택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두었다(박준석, 2007: 197). 영국의 경우 폭탄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토니 블레어(T. Blair) 총리는 국내에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정보기관의 대테러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광범위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테러범죄 피의자를 기소 전 9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the Prevention of Terrorism Bill)」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부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08년 6월 11일 테러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기간을 종전 28일에서 48일로 늘리는 것으로 하여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홀건(J. Horgan, 2005: 51)은 테러리즘은 본질적으로 비단 군대나 경찰이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남아있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홀건의 주장은 사회적 맥락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Pickering, McCulloch and Wright-Neville, 2008: 1-2).

테러리즘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 신념, 종교, 빈부 등의 차이를 증폭 시킴으로써 사회적 분열과 긴장관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일어나는 테러리즘과 그 대응 방안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테러리즘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관습적인 규범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반 요인들에 기인하여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테러리즘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점점 커져만 가는 소외와 분노의 결과로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억압 및 범죄화의 접근방식에 기반을 둔 국가 주도의 테러대응 전략이 오히려 테러리즘의 발생 및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커링 등(Pickering et al., 2008)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을 둔 대테러활동 모형은 이 연구의 핵심 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활동의 주체를 경찰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찰, 군대, 정보기관 등을 통칭하는 대테러기관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대테러활동의 접근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테러리즘과 대테러활동

#### 1) 테러리즘

대테러활동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의하여 왔지만, 테러리즘의 상대적인 성격 때문에 그것이 옳던 그르던 테러리즘을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테러리즘이란 특히 강압적인 수단으로써 테러를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sup>1)</sup> 그 밖에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래커(W. Laqueur)는 테러리즘이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비합법적인 힘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펠크(R. A. Falk)는 테러리즘이란 행위자가 어느 정부나 혁명집단의 소속인 것과 관계없이 적절한 도덕심과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일종의 정치적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쟈킨스(B. Jenkins)는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변화를

1) 위키백과사전 : <http://en.wikipedia.org/wiki/Terrorism/2009.1.20>.

야기하기 위해 계획된 힘 또는 위협적인 힘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Davies, 2003: 14).

지금까지 학자들이 정의한 테러리즘의 개념을 토대로 테러리즘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테러리즘의 주체는 국가, 준국가기관 및 특정 정치단체라는 점이고, 둘째, 테러리즘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셋째, 테러리즘의 수단으로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김진혁, 2007: 112-113).

미국 CIA 대테러센터의 전 부국장 필라(P. Pillar)는 테러리즘의 핵심적인 요소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테러리즘은 즉흥적인 분노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둘째, 테러리즘은 마피아와 같은 범죄단체처럼 돈을 벌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범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현존하는 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테러리즘은 군사적 목표나 전투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다. 넷째, 테러리즘은 군대와 같은 국가 단위의 집단이 아닌 보다 소규모의 집단들에 의해 실행된다(Davies, 2003: 14-15).

## 2) 대테러활동

대테러활동(counter-terrorism)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부, 군대, 경찰 및 관련기관이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상적 활동이나 전술 또는 전략을 뜻한다.<sup>2)</sup> 그 밖에 테러활동에 대하여 사전적 예방, 예견, 대응, 저지, 진압하는 모든 활동을 대테러활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창호·주철현·장예진, 2008: 183). 실무적으로는 대테러 대응기관에서 사용하는 실무적인 의미로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제2조』).

따라서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정부, 경찰, 군대 및 정보기관 등(이하 대테러기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리즘 혐의자의 관리, 테러리즘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 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리즘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9·11 테러 사건 이후 각 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이 테러리즘에 대응

2) 위키백과사전 : <http://en.wikipedia.org/wiki/Counter-terrorism/2009.1.20>.

하는 방식, 즉 대테러활동의 접근방식은 크게 화해(accommodation), 범죄화(criminalization), 억압(suppression)의 세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Pickering, McCulloch and Wright-Neville, 2008: 13).

첫째, 화해는 테러리즘 활동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다 관대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치적 동기를 배제한 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 범죄자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화해 접근방식은 종종 좌파(the Left)의 대테러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가 테러리스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면에 그러한 주장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폭력적 수단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부여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테러리스트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또 다른 테러리즘의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범죄화는 테러리스트들을 일반 범죄자들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가의 대테러활동이 본질적으로 응보적인 정책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의 해결은 도외시 한 채, 테러리스트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셋째는 억압이다. 억압적인 접근방식은 테러집단의 구성원들이나 그 공범자들을 일반적인 범죄집단의 구성원들이나 그 공범자들에 비해 엄격하게 처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옹호론자들은 국가가 테러리스트들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판론자들은 국가가 테러리즘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서 억압에 의한 접근방식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테러리스트들에게 뜻하지 않은 반국가활동의 혐의를 씌우는 결과를 가져 올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지역사회에서의 테러리즘과 그 대응 : 영국의 사례

2005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 4명의 젊은 영국 청년들이 집에서 만든 수제 폭탄으로 런던의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 네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테러를 일으켜 시민들을 살상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파괴시켰다. 이 사건으로 52명이 죽고 7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범인들은 모두 영국에서 태어난 이슬람교도들(Muslim)<sup>3)</sup>로서 그들은 단지 다수의 인명을

3)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의 범인 4명 모두 파키스탄계 이민 2·3세 '영국인'이었다. 한편, 잇단 국내·국제테러에 영국 무슬림 2·3세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통합을 간파한 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테러리즘 자양분이 됐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 영국학교들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무슬

살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계의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인 영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테러의 목표로 삼았다.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사건이 있는 후 정확히 2주일 뒤인 7월 21일, 영국에 거주하는 동아프리카 출신의 정치적 망명자들이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사건을 모방하여 대중교통 시설 등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사건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인들이 사용한 기폭장치의 고장으로 폭탄을 폭발시키는 데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다음날인 7월 22일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7월 7일과 21일 연이은 테러사건들로 테러경보가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테러 용의자로 지목당한 브라질 출신 청년 제안 샤를레스 데 메네제스(Jean Charles de Menezes)가 경찰관들의 오인 사격으로 사망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브라질 이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브라질계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이 영국에서 ‘이방인들(outsiders)’에 불과한 존재이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대테러 활동의 무고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신과 공포가 지역사회에 퍼졌다(Pickering, McCulloch and Wright-Neville, 2008: 38).

이후 나중에 밝혀진 이 사건의 실체와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7월 21일 폭탄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수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후세인 오스만’을 용의자로 보고 그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연립주택 앞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인 7월 22일, 그 건물에서 메네제스가 나오자 영국 경찰은 그를 용의자후세인 오스만으로 오인하고 미행하기 시작했고 스톡웰 역에 정차한 객차 안에서 그를 검거하던 도중 메네제스의 머리 등에 총알 7발을 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당시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들이 미국 항공기 보안요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목표물을 즉시 무력화시키는” 특수탄환으로 무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즉 영국 경찰에서는 7월 21일 자살폭탄 테러에 실패한 뒤 도주 중이었던 용의자의 추격을 위해 특수탄환을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고 또한 특수탄환을 사용해 테러범들이 기폭장치를 만질 수 없도록 즉사시키는 강경 대응방안을 마련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연합뉴스, 2007년 10월 16일자).<sup>4)</sup>

---

립 학생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몇 개월씩 출신 나라의 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내일신문, 2008년 12월 4일자).

4) 결국 2007년 11월 1일 브라질 청년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 런던 중앙형사법원 배심원단은 런던 수도경찰청이 당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런던 수도경찰청에 17만 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소송비용 38만 5,000파운드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뉴시스, 2007년 11월 2일자).

### 3. 지역사회 대테러활동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은 대테러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결합된 모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은 지금까지 국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대테러기관 주도의 대테러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대테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테러활동 모형은 준군사적인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준군사적인 모형은 “억압” 모형 및 “범죄화” 모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예외적인 힘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 및 범죄화 접근방식에 의한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은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대한 반명제(antithesis)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McCulloch, 2001: 3-4).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 등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선구적인 경찰활동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하나의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거나 수용되는 개념적 정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관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개인적 무질서 그리고 이웃 쇠락(neighbourhood decay) 등과 같은 현시대의 지역사회 문제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으로 이해되고 있다(Trojanowicz and Bucqueroux, 1990: 5).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찰활동에 있어서 강제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회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테러리즘을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대테러기관의 정책 결정과정에 보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대테러활동 전략이나 전술이 대테러기관의 관심사항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요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약한 대응 방식이라거나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의 술책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근거한 대테러활동,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부적절한 인식에 불과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테러기관이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채 과도하게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그 위협을 가라앉히기 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Pickering, McCulloch and Wright-Neville, 2008: 20).

강경책 위주의 대테러활동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뿐이었고 오히려 점증하는 테러리즘의 폭력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통

적인 준군사적 대테러활동 전략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과의 접목으로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대테러활동 모형들을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Pickering, McCulloch and Wright- Neville, 2008: 26).

#### 1) 전통적인 대테러활동 모형

1970년대와 80년대, 대표적으로 북아일랜드와 같은 지역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테러활동이 강화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전략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대테러활동 전략은 범죄화 및 억압을 통해 강압적으로 테러리즘을 일소하겠다는 군국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테러기관과 지역사회는 매우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 2) 지역사회 정보 모형(community intelligence model)

지역사회 정보 모형이란 설득(persuasion), 협상(negotiation) 그리고 의사 형성(agenda setting)의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일종의 '온건책(soft power)'이라고 할 수 있다. 대테러기관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된 신뢰관계는 지역사회 정보 모형의 근원이 된다.

지역사회 정보 모형은 전통적인 대테러활동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모형으로 주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경찰 등 대테러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대테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3) 소속감 모형(belonging model)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킴으로써 테러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소속감 모형의 핵심이다. 소속감 모형은 지역사회 정보 모형에 비해 보다 민주적인 접근방식이다.

특히 경찰 등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가 크고 열성적인 구성원들에 의한 독점적인 참여를 일정 부분 배제하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구성원들과의 접촉과 유대관계를 증대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다수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대테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4) 사회적 통합 모형(social cohesion model)

사회적 통합 모형은 지역사회 정보 모형과 소속감 모형을 결합시킨 지역사회 대테러활동 모형이다. 이 모형은 지역사회 정보 모형과 소속감 모형을 통해 향상된 지역사회 주민들과

경찰 등 대테러기관 사이의 신뢰와 합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투명한 대테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테러기관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접근방식이다.

사회적 통합 모형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합과 소속감 증진을 위해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려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통합적인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III. 지역사회 대테러활동 방안

#### 1. 우리나라 대테러활동의 현황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활동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1982년 대통령훈령 제 47호인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이 제정된 이래로 이 지침에 근거한 테러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하여 왔다.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테러대책회의와 그 산하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5개 상설 또는 비상설 대책기구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사건 발생시에는 협상팀, 대테러특공대 및 지원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포럼, 2007: 152-153).

먼저 테러대책회의는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다.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무총리실장, 4) 대통령실 경호처장 ·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관세청장 · 경찰청장 ·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대책회의는 국가 대테러정책 및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관계기관<sup>5)</sup>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

5)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1)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임명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테러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 강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

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가 있다.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관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1) 테러협박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을 심의·조정한다.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대테러 부대는 경찰특공대로 지난 1983년 10월 5일 치안본부 소속으로 창설되었다. 이후 경찰특공대는 조직 개편으로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특공대는 모두 7개이다. 7개 경찰특공대는 각각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제주지방경찰청의 경비과 소속으로 각 경찰특공대는 소속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특공대는 1) 각종 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2) 인질사건 발생시 진압 및 인질구출, 3) 총기·폭발물·화생방 사건, 4) 국제조직범죄 등 특수범죄 진압, 5) 건물 불법점거 난동 진압, 6)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7) 요인경호 및 대테러협의회 결정사항 수행, 8) 중요사건 예방·진압과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범죄권 집중단속, 9)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 등을 수행한다(정우일, 2008: 386-387).

그러나「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은 정부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테러상황 하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테러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설치하는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가칭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인권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거센 실정이다(최응렬, 2008).

## 2. 지역사회 대테러활동 접근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대테러 활동은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상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경찰청은 다소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사이의 주도권 다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인 맥락에서 테러리즘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한다면 지금까지의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에 중심을 두고 보다 실질적인 대테러활동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전술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 모형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대테러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1) 지역사회 정보 모형에 의한 접근

지역사회 정보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웃 경찰활동(neighborhood policing)이다. 이웃 경찰활동이란 지역의 진정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관계를 만드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웃경찰활동에서는 공동생산(coproduction) 또는 협력기능(coactivity function)이 강조되는데, 말하자면 범죄와 무질서라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한 경찰과 시민 적극적인 활동 또는 체계화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경찰관들은 관할 구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그 지역의 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 과정 속에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이황우, 2005: 625-626).

인스(M. Innes, 2006: 222-224)는 이웃 경찰활동이 지역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대테러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는 경찰이 기존에 수행하던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은 더 이상 새로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대테러 업무를 이웃 경찰활동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경찰이 지역의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웃 경찰활동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테러리즘과 관련 있다고 느끼는 의심스런 동향들을 쉽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과 지역의 연결망은 광범위하면서도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보다 가시적인 외근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경찰관들은 지역사회의 다양성,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동향 그리고 지역사회의 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경찰관들이 순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빈번하게 접촉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계 활동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테러기관이 그동안 기관별로 수행하던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된 하나의 기관에서 대테러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미의 이웃 경찰활동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기관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를 통해 테러리즘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의심스런 동향들을 쉽게 탐지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테러리즘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생산·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소속감 모형에 의한 접근

로우더(I. Loader, 2006: 204-209)는 9·11 사건 이후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전개된 경찰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웃 경찰활동 중심의 대테러활동 전략을 비판하고 소속감 모형에 의한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이웃 경찰활동에서 지역사회 업무를 수행하는 “광범위하고 피상적인(wide and shallow)” 접근방식을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다수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순찰 위주의 경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즉 지역사회의 불안감 유발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활동의 접근 방식은 ‘소비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상적인 순찰활동 위주의 경찰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사들을 충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방해하고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다.

소속감 모형은 지역사회 정보 모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심도 있고 한정된(deep and narrow)”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인식하고 경찰이 비록 지역사회의 소수자라고 할지라도 그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에 알맞은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속감 모형을 통해 경찰은 지역사회 소수집단에 속하는 구성원과의 신뢰관계와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주류적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

고 계층, 출신지역, 학력, 학벌, 빈부, 종교, 민족 등에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이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테러기관의 핵심 기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대테러기관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심도 있고 한정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게 될 때,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서 당연히 테러리즘의 발생과 진행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3) 사회적 통합 모형에 의한 접근

사회적 통합 모형은 소속감 모형과 지역사회 정보 모형을 절충시킨 접근 방안이다. 이 모형은 지역사회 정보 모형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고 소속감 모형의 가설적인 방향 제시의 문제를 극복하는 접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은 중립적인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신했다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경찰이 빈번하게 인종, 민족, 계층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경찰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 모형에 따른 접근방안에서는 경찰의 핵심적 기능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소중히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McCulloch, 2001: 32-52).

사회적 통합 모형은 경찰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장기간에 걸쳐 쌓은 신뢰와 합법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모형의 목적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이해 및 의사소통 증진과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의 향상에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민주적인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로부터 정보가 끊임 없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테러리즘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테러리즘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통합 모형에 의한 대테러활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새롭게 연결되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테러활동은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초로 해야 한다(Pickering, McCulloch and Wright-Neville, 2008: 31-33).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민자는 2003년 4만4000여 명에서 2007년 10만6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6년 한 해에 결혼한 농어촌지역 남성의 41%가 외국여성과 가정을 꾸렸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이나 이태원 '무슬

림 거리'처럼 전국에 걸쳐 50여 개 이상의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초 발표한 2008 국내 10대 트렌드의 하나로 '가정과 사회의 다문화 및 글로벌화'가 선정될 정도로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다(정경원, 2008).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의 인종, 민족, 계층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대테러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대테러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정보가 끊임 없이 대테러기관에 유입되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9·11 테러 이후 선진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극적인 반테러(anti-terrorism)에서 적극적인 대테러(counter-terrorism)로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원, 2008: 193). 그러나 대테러활동의 성공 여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테러범들을 강력하게 진압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테러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들을 밝혀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한 순간 테러리즘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당하고 헤어 나올 수 없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2004년 국제연합(UN)에서 발행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들로 외세의 지배, 빈곤, 실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Untied Nations, 2004: 48). 이러한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새롭게 다가오는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유형

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대테러활동 방안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테러기관이 비록 지역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목소리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테러기관은 언어와 민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계속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테러리즘의 발생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셋째, 대테러기관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인권을 소중히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구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참여가 광범위해지고 향상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가 끊임 없이 대테러기관에 유입되고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테러리즘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국가정보포럼. (2007). 『국가정보학』, 박영사.
- 김진혁. (2007).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109-123.
- 김창호·박철현·장예진. (2008). “대테러 범죄 유형과 발생에 대한 대응”, 『한국경찰학회보』, 10(4): 181-198.
- 박준석. (2007).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195-214.
- 이상원. (2008). “Counter-terrorism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화 방향”, 『대테러연구』, 31: 159-195.
- 이황우. (2005). 『경찰행정학』, 법문사.
- 정경원. (2008). “차별 없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위해”, 아시아경제, 12월 10일자.
- 정우일. (2008). “인질협상팀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 369-398.
- 최응렬. (2008). “‘테러방지법’ 제정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서울신문, 11월 28일자.

### 2. 국외문헌

- Davies, Barry. (2003). *Terrorism*, London: Virgin Books, Ltd.
- Horgan, J. (2005). *The Psychology of Terrorism*, London: Routledge.
- Innes, M. (2006). “Policing Uncertainty: Counter Terror through Community Intelligence and Democratic Policing”, *ANNALS, AAPS*, 605: 222- 241.
- Loader, I. (2006). “Policing, Recognition and Belonging”, *ANNALS, AAPS*, 605: 202-221.
- McCulloch, J. (2001). *Blue Army: Paramilitary Policing in Australia*, Carlton: Melbourne University Press
- Pickering, S., McCulloch, J., and Wright-Neville, D. (2008). *Counter-Terrorism Policing: Community, Cohesion and Security*, Spring Street,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 Trojanowicz, R. and Bucqueroux, B. (1990).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Ohio: Matthew Bender & Co.
- United Nations. (2004).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New York: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3. 기타자료

내일신문, 2008년 12월 4일자

뉴시스, 2008년 11월 2일자

아세아경제, 2008년 10월 28일자

연합뉴스, 2007년 10월 16일자

<http://en.wikipedia.org/wiki/Counter-terrorism>

<http://en.wikipedia.org/wiki/Terrorism>

## Abstract

### A Study on Community Counter-terrorism

Jung, Woo-Il

In this study, Horgan(2005)'s argument highlights the centrality to any successful counter-terrorism strategy of understanding the social context in which terrorist ideologies take root. Counter-terrorism refers to the practices, tactics, techniques, and strategies that governments, militaries, police departments and corporations adopt in response to terrorist threats and/or acts, both real and imputed.

Pickering et al.(2008) historically explained fou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as traditional counter-terrorism model, community intelligence model, belonging model, social cohesion model. It is thus proposed that counter-terrorism strategies are based in established networks within the community and proactively seeks to continually renew thes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unity and police. This approach must embrace an explicit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and its political imperative and drive in a policing organization explicitly committed to social cohesion and human rights in both discourse and practice.

We, therefore, suggests community tree counter-terrorism approaches, or community intelligence model, belonging model and social cohesion model to apply to counter-terrorism agencies in Korea. These models are on the basis of Pickering et al.'s counter-terrorism models, which by using community policing to boot socially cohesion police are better able to position themselves as mediators to negotiate settlements between the competing demands of different social groups.

**Key Word : community, counter-terrorism, community intelligence model, belonging model, social cohesion model**

논문투고일 2009.04.20, 심사일 2009.05.12, 게재확정일 2009.06.10